「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상호 의원

2. 찬 성 자: 김재우 의원 외 9인

3. 제안이유

○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길의 조성(안 제4조)

나. 맨발걷기길의 관리(안 제5조)

다. 부대시설의 설치(안 제6조)

라. 관리부서의 지정·운영(안 제7조)

마. 관리의 위탁(안 제8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맨발걷기길 조성 및 유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